

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

• 어두운 란(■)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	일
신고인	건축주			
	전화번호			
	주소			
대지위치	지번			
허가(신고)번호	허가(신고)일자			년 월 일
신고내용	연장존치기간	년	월	일까지
	연장사유			

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건축주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고안내

제출하는 곳	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	처리부서	건축허가(신고)부서
첨부서류	없음		수수료 원

근거법규

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5조의2 제2항	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,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	--